

『구미시 시금고 지정 지역사회 공헌사업 기탁금 출연 동의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지역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「일천억원 장학기금 조성사업」의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,
- 시금고·자치단체 간 협력사업인 구미시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협약에 따른 협력 사업비를 세입예산에 편성 후 2019 회계연도 세출 예산에 반영하여 적정하게 집행하고자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출자·출연 개요
 - 대상기관 : (재)구미시장학재단
 - 대 표 : 장세용
 - 소 재 지 :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55
 - 출연금액 : 600백만원
- ※ 시금고 약정(2016. 9. 7.)

구 분	총 액	2017년	2018년	2019년	비 고
대구은행	12억원	4억원	4억원	4억원	
농 협	5억원	1.5억원	1.5억원	2억원	

○ 주요 사업

- 사 업 명 : (재)구미시장학재단 장학생 선발
- 사업기간 : 2011년부터
- 사업내용
 - (재)구미시장학재단 정관 제4조에 의거하여 매년 장학기금의 이자 발생분에 한하여 장학생 선발 및 지급
 - 2019년 장학생 선발계획 : 190명, 3억1천만원 지급예정
 - ▶ 고등학생 : 진학우수/성적우수/고교특기장학금
 - ▶ 대 학 생 : 진학우수/성적우수/기회균등/예체능특기 장학금

○ 출자·출연의 필요성

- 지역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「일천억원 장학기금 조성사업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금고와 자치단체간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(재)구미시장학재단 출연금 지원을 협약함에 따라,
- 「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5조 1항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·금고 간 협력 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고, 「지방재정법」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집행하여야 하므로 적정한 예산집행을 위한 출연이 필요함.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
- 「구미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」 제7조
- 「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, 제15조

○ 예산조치 : 2019년도 예산편성

○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○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동의안은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9회계연도 세출 예산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구미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,
- 「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5조에 의거 구미시와 금고 간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시금고의 (재)구미시장학재단에 대한 기탁금을 세입예산에 편성 후 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,
- 「구미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」 제7조에 기금 출연의 근거가 있고 장학기금으로 장학금 지원 등 지역 우수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(재)구미시장학재단에 600백만원을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